



미 성 동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제목: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나. 공고기간: 2025. 11. 18.~12. 2.(14일간)

다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
라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
붙임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. 끝.

미 성 동 장



수신자 전국읍면동장

주무관

조미정

복지지원계장

이숙미

미성동장

2025. 11. 18.

김윤희

협조자

시행 미성동-12913

(2025. 11. 18.)

접수 은풍면-12613

(2025. 11. 18.)

우 5416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향로 371, (산북동)

/ www.gunsan.go.kr

전화번호 454-7827

팩스번호 063-464-7819

/ mj042400@korea.kr

/ 대국민 공개